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

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:류성걸・이명수・정운천

김용판・金炳旭・홍석준

강대식 · 양금희 · 박덕흠
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금 세계 각국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.2%에서 16년 새 24.7%로 낮아졌으며,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%에서 21%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고, 영국은 지난 10년 새 법인세율을 30%에서 19%로 낮춘 데 이어 2%포인트를 더 내릴 계획이며, 일본도 2020년까지 세율을 20%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에서 25%로 올렸음.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도 4개로 확대함으로써,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

이에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

단순화하고, 각각 9%와 18%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,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(안 제55조제1항,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등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5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
5억원 초과	4천5백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)

제57조의 제목 중 "외국 납부 세액공제"를 "국외기납부세액공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외국납부세액의"를 각각 "국외기납부세액의"로 한다.

제57조의2의 제목 중 "외국납부세액공제"를 "국외기납부세액공제"로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외국 납부세액"을 "국외기납부세액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외국 납부세액이"를 "국외기납부세액이"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"3개월"을 "4개월"로, "4개월로"를 "5개월로"로 한다. 제75조제1항 중 "4개월"을 "5개월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 및 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,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55조(세율) ①
<u>.</u>
과세표준 세율
<u>5억원 이하</u> <u>과세표준의 100분의 9</u>
<u>4천5백만원 + (5억원을</u>
5억원 초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
18)

655억8천만원 +

(3천억원을 초과하는

금액의 100분의 25)

3천억원 초과

② (생 략) 제57조(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

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

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

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

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

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

수 있다.

- 1. <u>외국납부세액의</u> 세액공제방법: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 금액"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
- 2. <u>외국납부세액의</u> 손금산입방법: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

② (현행과 같음)
제57조(<u>국외기납부세액공제</u> 등)
①
 국외기납부세액의
2. <u>국외기납부세액의</u>

② ~ ⑦ (생 략) 제57조의2(간접투자회사 등의 외 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투자회사, 투자목적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(같은 법 제9조제 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, 투 자유한책임회사 및 「부동산투 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 정 부동산투자회사,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이 조에 서 "간접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 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 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(제57조제1항 및 제6 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) 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 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(국 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12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

제57조의2(간접투자회사 등의 <u>국</u>
<u>외기납부세액공제</u> 및 환급 특
례) ①
국외기납부세
<u></u> 액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본다)을 빼고 납부 하여야 한다.

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<u>외국 납부</u> 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60조(과세표준 등의 신고)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(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)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⑨ (생 략)

제75조(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) ① 제60조의2제1

②국외기납
<u>부세액이</u>
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0조(과세표준 등의 신고) ① -
<u>4개월</u>
<u>5개월로</u>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75조(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
성실 가산세) ①

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 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 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 세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의 규정에서 같다)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5개월
① (처체고 가요)

② (생략)